

## 교원인사위원회규정

규정번호	3-8-8
제정일자	2005.07.01.
개정일자	2020.06.01.
개정차수	8차
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새빛학원 정관 제49조에 의거하여 안산대학교 교원 인사위원 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총장이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  - 2.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임명 제청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40조의 2 제1항 제4호를 참고하여야 한다.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입학처장을 포함하여, 총장이 위촉하는 10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- 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간사)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  - 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제8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인사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. 제9조(회의의 비공개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참석 등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0조(기타사항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추

이 규정은 2009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후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최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초

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